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카드

공 약 명	어르신 조세부담 완화			관리번호	1-8
추진부서	세정과	담 당 자	김정해	전화번호	2340
협조부서	-				
실천목표	임기 내 완료	추진상황	완료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2023년
- 사업량 :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공약내용 : 세부담이 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재산에 부과되는도세 감면 추진('22.4.)

※ '22년 이미 공약이 달성되었으나, 추가하여 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22년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부담을 경감(1인당 약 1만 원, 총 34억 원)함으로써 이미 공약이 완료됨

□ 추진실적

《기 추진실적 : '22. 12월말》

-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추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

- ① 세부담 완화 관련 행안부-자치단체 회의 및 의견 조회('22. 6월)
- ②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추진 및 시행령 개정('22. 6월)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확정(60→45%) 및 적용
 - '22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주택분) 경감(1인당 약 1만 원, 총 34억 원)

《2023년 1분기 추진 내용》

○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추진

① 입법예고 : '23.3.15.~3.30.(완료)

- 감면대상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 감면세목 : 재산세(주택분)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감 면 율 : 각각 50%
- 적용시기 : 2023.7월 재산세(주택분)부터 적용
- 감면효과 : 연간 578백만 원 추정

《2023년 2분기 추진 내용》

○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추진

① 제319회 임시회 「강원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감면 조항(제2조의 2) 신설('23.5.24)

- 감면대상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 95,549명
 ※ 2021년 기준 강원도 총 155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 33만명(21.4%)
- 감면세목 : 재산세에 포함된 도세 →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감 면 율 : 각각 50%
- 적용시기 : 2023.7월 재산세(주택분)부터 적용(2023년 1년간 감면)
- 감면효과 : 연간 578백만 원 → 1인당 6,050원 부담 완화 효과

《현재까지 목표달성》

주요사업	목표치(2023)	추진상황 (완료/추진중/미착수)	추진내용
어르신 조세 부담완화	도세감면(재산세 부가세) 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지방교육세	완료 (추가 추진중)	① 입법예고 : '23.3.15.~3.30 ② 제319회 도의회에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원안가결 →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감면 조항 (제2조의 2) 신설('23.5.24) ③ 지방세정보시스템 감면코드 개발 완료

② 조례개정 후속 조치 이행(재산세 부과 등)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감면코드 개발 완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30여회)을 통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상 재산세(주택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조항 신설

《2023년 3분기 추진 내용》

○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추진 완료

① 공약의 가장 빠른 이행시기인 2023.7월 재산세(주택분)부터 적용 완료

《2023년 4분기 추진 내용》

○ 민선8기 공약사업(어르신 조세부담 완화) 추진 완료

(공약내용)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재산에 부가되는 도세 감면(22.4월 현장공약)

(추진경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23.5.24.)

- ①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감면 조항 신설
- ②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재산세(주택분) 감면 조항 전국 최초 신설

(주요내용)

- ① 감면대상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 ② 감면세목 : 재산세(주택)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③ 감 면 율 : 각각 50%
- ④ 적용시기 : 2023년 7월 재산세(주택)에 적용(2023년 1년간 감면)
→ 전국최초 어르신 10만 명 이상(110,863명) 감면 혜택, 총 558백만 원

<기대효과>

- 민선8기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빠른 시기에 이행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했고, 세부담이 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지방세 부담 완화에 기여함